제31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	1.사전수요예측 운영관련 준수사항(신설) ○ (자격요건)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범위)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요건) 신규상장 주권의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 (운영방법)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사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전문 투자자와 비밀유지 계약 체결 – 전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거짓·과장된 정보의 제공 및 복수의 전문투자자 간 차별적 정보 제공 금지 –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복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를 파악하되, 3개 이상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참여 거절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로 추가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관련 준수사항(신설) ㅇ (자격요건)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갖추고 사전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 재산 보유 ㅇ (보호예수기간 및 방법)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보호 예수기간 설정 및 해당 기간 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 ㅇ (수량상한) 코너스톤투자자에 대한 사전청약 수량의 전체 한도는 전체 공모 수량의 25%이하, 개별 한도는 15%이하 범위에서 공모주 배정 방법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협회가 구체적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 ㅇ (이해상충 방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 금지 – 주관사가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및 투자자별 사전청약 수량 결정에 관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ㅇ (운영방법) 코너스톤투자자와의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자 자격 확인 및 사전청약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실사보고서 작성 후 사전청약 실시 ▲증권신고서 기재범위 내 정보 제공 등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사전수요예측 운영관련 준수사항(신설) ㅇ (자격요건)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범위)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요건) 신규상장 주권의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 ㅇ (운영방법)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사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전문 투자자와 비밀유지 계약 체결 – 전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거짓·과장된 정보의 제공 및 복수의 전문투자자간 차별적 정보 제공 금지 – 전문투자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복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를 파악하되, 3개 이상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시도하였으나 참여 거절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건전 영업 행위로 추가하여 위반시 제재 근거 마련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운영관련 준수사항(신설) ○ (자격요건)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갖추고 사전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 재산 보유 ○ (보호예수기간 및 방법)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보호 예수기간 설정 및 해당 기간 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 ○ (수량상한) 코너스톤투자자에 대한 사전청약 수량의 전체 한도는 전체 공모 수량의 25%이하, 개별 한도는 15%이하 범위에서 공모주 배정 방법을 고려하여 금융투자협회가 구체적 상한을 정하도록 규정 ○ (이해상충 방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 금지 – 주관사가 코너스톤투자자 선정 및 투자자별 사전청약 수량 결정에 관한 기준·절자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 ○ (운영방법) 코너스톤투자자와의 사전청약에 대한 정보제공, 투자자 자격 확인 및 사전청약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실사보고서 작성 후 사전청약 실시 ▲증권신고서 기재범위 내 정보 제공 등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산업통상부)	1.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강화) ○ 배관설비 시공기준 강화 – (지하배관) 중압 이상의 배관에는 굴착공사로 인한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 – (지하배관) 배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주위에 명확히 표시할 것 – (지상배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할 것 2.LNG 저장탱크의 종합안전등급 및 진단 항목 · 주기(강화) ○ LNG 저장탱크 안전등급별 정밀안전진단 수검주기 차등화 – (기존) 5년 → (개정) ▲A등급 6년, ▲B·C등급 5년, ▲D·E등급 4년 ○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규정 3.가스온수기 시공자의 보험 가입(신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온수기의 시공자에 보험 가입 의무 부과 4.임시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승인 및 안전기준 등(신설) ○ 정압기지·밸브기지 공사시 설치하는 임시공급 시설의 안전기준* 마련 * ▲주위에서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것 ▲접근 금지 경계 표지를 할 것 등	규제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4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부)	1.자전거 시험방법 및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표시사항 개정안(강화) ㅇ 최고속도 조작방지 방안(이륜자전거) – 최고속도가 법정최고속도를 초과하도록 이용자가 속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등이 인쇄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 ㅇ 수평하중 피로시험(이륜자전거) – 자전거 제조업자 등이 자전거에 대해 수평하중 피로시험을 받도록 규정	규제 심사 완료
5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부)	1.자전거 시험방법 및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표시사항 개정안(강화) ㅇ 최고속도 조작방지 방안(전동보드) – 최고속도가 법정최고속도를 초과하도록 이용자가 속도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금지 –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등이 인쇄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산업통상부)	1.전동보드 배터리의 과방전 및 과전류 안전요구사항(신설) ○ 전통킥보드 배터리가 이륜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과전류·과방전 시험을 만족하도록 규정	규제심사완료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정보통신공사업 교육내용 · 방법(신설) ○ 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통신공사업교육의 방법 및 내용 구체화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교육 방법(집합 또는 원격) 및 시간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필수 교육 내용* *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윤리경영 등 2.정보통신공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보험 · 공제의 세부사항(신설) ○ 법 개정으로 신설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준 구체화 –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기준* 구체화 * ▲ 가입기간 :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 ▲ 가입금액 : 정보통신공사의 계약 금액 이상의 금액 등 세부 내용 규정	규제심사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8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신설) ㅇ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규정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하는 금액 세부 기준*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이행기간 규정 *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전체 도급 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등 공사 기간별 세부 금액 규정	규제 심사 완료
9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 · 방법 ·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최적요금제 고지내용 · 방법 및 위반 시 시정권고 등 최적요금제 고지 관련 제반사항(신설) ㅇ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최적요금제의 고지 의무사업자·대상·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규정 * ▲ 고지의무사업자(매출액 1조원 초과 이동통신사업자) ▲ 고지대상(고지의무사업자의 휴대폰 후불요금제 가입자)등 관련 세부 내용 규정	규제 심사 완료
1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기간통신사업자의 부정청약 다수 체결 기준 등(신설) ㅇ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따른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 요건인 부정청약 다수 체결 기준*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 근거 규정 신설 * (전체계약 6만건 이하) 최근 6개월간 부정계약 건수 30건 이상 (전체계약 6만건 초과) 최근 6개월간 부정계약 건수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계약 건수의 1만분의5 이상인 경우	본심사 상정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대포폰 위험성 고지 및 그에 따른 동의 등(신설) ○ 이동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 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타인사용 제한 행위 유형* 구체화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개통하여 타인이 단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달리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개통하고 타인이 사용한 경우 등	규제 심사 완료
		3.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 등(신설) ○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기준에 포함될 내용* 규정 * ▲연 1회이상 교육·훈련 ▲점검 주기 및 방법 등 ○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 기준의 신고 및 제출 기간* 규정 * 사업자 등록 시 3개월 이내 신고, 변경 시 1개월 내 변경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관리·감독기준에 대한 보완 요구권 신설	규제 심사 완료
		4.대리점·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등(신설) ○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규정 * ▲본인확인 절차 이행 여부 ▲명의도용 계약 존재 여부 등 ** ▲정기·수기 점검 ▲민원내용 확인 등	규제 심사 완료
		5.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보고의무 기간(신설) ○ 이동통신사업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대리점·판매점에서의 부정계약 확인 시 보고기한 규정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6.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 등(신설) ○ 대리점에 대한 계약 해지 및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 철회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최근 6개월 동안 부정 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1만분의5 이상일 경우 ** 사전 사유 통보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등	본심사 상정
		7.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관련 조치사항 등(신설) ○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해야 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매뉴얼 필수 기재* 사항 구체화 * 침해사고 대응 조직 및 조시사항, 교육·훈련 사항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명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조치의 내용* 및 절차** 규정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 ** 보호조치의 이행 기한 등이 포함된 서면 명령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이행조치 사항 보고 등 ○ 전기통신사업자가 침해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 해야하는 내용* 등 세부 사항 규정 * 보호조치의 내용 및 제공기간 등	규제 심사 완료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보건복지부)	1.의료인의 금지행위(신설) ㅇ 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사주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본심사 상정
12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	1.의료인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신설) ㅇ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허위, 과장 또는 불명확한 내용 등을 게재하여 환자를 오인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2.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 확대(신설) ㅇ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등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를 기존 품위손상 행위 유형에 추가	본심사 상정
13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소방청)	1.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ㅇ 송풍기 일체형 댐퍼의 구조·재질·내구성능 기준을 신설하고 표시 사항 강화 – (구조) 풍량조절 가능, 공급부 외의 부분의 누기 최소화, 송풍기 모터 연결 전선의 내화배선으로 설치 – (재질) 송풍기 날개 및 후레임의 불연 재료 사용 – (내구성능) 작동시험설비에 부착하여 2시간 연속 운전 시 송풍기 부품의 이상이 없을 것 – (표시) 최대송풍량을 표시하고 회전체에 의한 손가락 끼임 등 주의·경고 문구 추가 표시	규제 심사 완료